

업체 등록 및 평가기준

1. 업체등록

- 1.1 기술, 품질 및 경영분야 평가결과 모두 “적격”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업체로 승인
- 1.2 “조건부 적격”의 경우는 최대 60일 이내 보완이 완료되면 등록업체로 승인(단, 입찰참가 희망 시에는 입찰 전까지 보완 및 재평가 완료)

2. 업체평가

2.1 평가방법

- 2.1.1 기술, 품질 및 경영분야 별로 평가항목 평가와 평가항목 평가결과를 가지고 업체등록 적격여부를 평가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 2.1.2 평가항목 중 역무의 특성상 적용이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판정은 나머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백분율로 환산한다.

2.2 기술분야 평가

2.2.1 용역/공사 업체

① 평가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1. 기술인력 보유현황 (품질인원포함)	상. 역무수행을 위한 기술인력이 충분히 확보됨 중. 기술인력이 최소 필요인력만 확보됨 하. 확보된 기술인력이 해당 역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
2. 설비보유 현황	상. 역무수행을 위한 각종 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중. 역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설비가 확보됨 하. 확보된 설비가 해당 역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3. 시험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상. 역무수행을 위한 검사 및 시험장비를 충분히 보유함 중. 역무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검사 및 시험장비를 보유함 하. 보유한 검사 및 시험장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함
4. 자격(면허) 보유현황	상. 역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 및 면허를 충분히 보유하여 운영 중. 역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 및 면허를 최소한 보유하여 운영 하. 역무수행을 위한 자격 및 면허가 부족함
5. 역무수행 능력	상. 업체가 해당 역무 수행 실적이 있거나 필요 인력의 50% 이상인 1년이상 관련 역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중. 업체가 관련분야 유사역무 수행실적이 있거나 필요인력의 40% 이상인 1년이상 관련 역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하. 유사역무 수행실적이 없으며 관련역무의 수행 경험 인력이 부족함
6. 기술자료 현황	상. 해당 역무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적절히 보유하고 있음 중. 역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음 하. 보유한 관련 기술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함
7. 기술개발 현황	상.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 중.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보통임 하.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주 의 사 항	1. 필요인력 : 기술능력 평가부서에서 해당 역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정한 인력 2. 유경험 인력 판정기준 : 해당역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역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기술부서에서 인정한 경력

② 최종평가

구분	적 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평가 기준	“상”이 70% 이상이고 “하”가 없는 경우	“상”이 60% 이상이고 “하”가 1개 이하인 경우	“상”이 60% 미만이거나 “하”가 2개 이상인 경우

2.2.2 기자재 공급업체

① 평가항목별 평가

분야	평가항목	만점	세부평가항목
설계	설계실적	5	설계실적(종합설계)
	설계능력 ^{주1)} (≥12)	15	필수 설계능력 평가(핵심)
			해석, 설계 프로그램 활용 여부
	설계인력	10	설계 실적도면 및 자료 점검
			설계경험 인원 적정성
	설계자료 및 기술개발	15	설계경험 및 능력
			설계·기술기준 등 설계도서 확보 여부
			설계자료/코드의 활용 여부
			기술연구소 등 운영실태

분야	평가항목	만점	세부평가항목
제작	제작실적	15	핵심부품 제작 경험
			핵심부품의 납품실적
			자체공장 수행 여부
	제작능력 ^{주1)} (≥12)	15	제작설비의 보유 적정성
			보유설비의 이력관리 상태
			기술분야 인증서 보유 여부
	제작품질	15	제작관련 자료보유/활용여부
			QP 또는 Traveller sheet(작업공정표) 운영
			작업장의 house keeping
	제작인력	10	작업자 인원 적정성
			작업경험 및 품질 인지도
시험	시험절차서 수립 및 운영	10	시험절차서 적정성
			시험데이터 및 자료관리 상태
	시험설비 운영상태	10	시험설비 적정성 및 환경
			시험장비관리 실태
	시험설비능력	10	시험설비의 활용능력
			외주시험시 시험수행능력
	시험인력	10	시험인력 적정성
			신청품목의 시험경험 및 인지도
계약 수행 능력	포장 및 운송	10	절차서 수립, 관리 적정성
			절차서 수행상태
	계약이행 실태	10	계약사후관리 실태 점검
			조직 및 운영상태
	하도급 관리	10	절차서 유지관리
			하도급 관리상태
	기타	5	기자재 계약수행결과 평가

※ 주1) AQ 등급 기자재의 필수항목, 기대점수 12

가) 세부평가항목 평가

- 우수(5), 보통(3), 불만족(0), 해당없음(3)

나) 평가항목 점수

- 세부평가항목 점수 합산

- 세부평가항목에 불만족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평가항목 점수는
“0”점 으로 처리

다) 평가항목 총점 및 만점 합계

- 평가가 수행된 평가항목의 점수 및 만점 합산

② 최종평가

가) 필수항목 점수, 평가항목 총점/만점합계(%), 세부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 분	평 가 기 준
적 격	필수항목 점수 $\geq$ 12점이고, 평가항목 총점/만점 $\geq$ 70%이고, 세부평가항목에 0점이 없는 경우 (세가지 모두 만족/AND)
조건부 적격	필수항목 점수 $\geq$ 12점이고, 평가항목 총점/만점 $\geq$ 60%이고, 세부평가항목에 0점이 1개 이하인 경우 (세가지 모두 만족/AND)
부적격	필수항목 점수 $<$ 12점, 평가항목 총점/만점 $<$ 60% 또는 세부평가항목에 0점이 2개 이상인 경우 (셋 중 한 개 해당/OR)

2.2.3 수리업체

① 평가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1. 조직 및 인력	인 력	○ 2점 - 기술(설계) : 0명 (경력 3년) - 정비/제작 : 0명 (경력 5년 0명, 경력 3년 0명, 경력 2년 0명) - 품 질 : 0명 (경력 3년) ○ 1점 - 기술(설계) : 0명 (경력 3년) - 정비/제작 : 0명 (경력 5년 0명, 경력 3년 0명, 경력 2년 0명) - 품 질 : 0명 (경력 2년)	상 $\geq$ 5점 중 $\geq$ 3점 하 $<$ 3점
	자 격	○ 자격 가점 (최대 2점) - 기술사 : 1.5 점 -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 1.0 점 - 기능사 : 0.5 점 ○ 해당 기술자격 분야 : 예) 금속, 기계, 에너지	
	조 직	○ 2점 : 부문별 조직 및 인원이 독립되어 있으며 조직별 업무분장이 체계화 되어있음 ○ 1점 : 부문별 조직 및 인원이 독립되어 있음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2. 정비 능력	자 료	○ 2점 : 다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활용 상태가 체계화되어 있음 - 법령, KEPIC 또는 ASME, ASTM, ANSI, KS 등 ○ 1점 : 다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활용 상태가 체계화되어 있고, 미흡한 기술 자료에 대한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 있음 - 법령, KEPIC 또는 KS	상≥6점 중≥4점 하<4점
	절 차 서	○ 2점 : 다음의 절차서 보유 - 정비, 용접관리, 용접사 자격부여, 장비주기점검, 시험/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 등 ○ 1점 : 절차서의 보유 상태가 일부 미흡함	
	규 격	○ 2점 : 공인규격*을 취득하거나 사내표준/규격을 수립하고 이행 상태가 적절함 ○ 1점 : 공인규격*을 취득하거나 사내표준/규격을 수립함 ※ 공인규격 : ASME, ISO, KS, KEPIC 등	
	기 술 개 발	○ 2점 : 해당 품목에 대해 기술자립이 되어 있거나, 외부 전문 업체/기관과 기술제휴/협약이 되어 전반적인 기술 지원을 받음 ○ 1점 : 해당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이 있음	
3. 보유 설비	설 비	○ 2점 : 기준설비를 보유하고 있음 - 예) 선반, 밀링머신, 드릴머신, 바란싱머신, 랩핑머신, 수압시험기, 용접기 등 ○ 1점 : 기준설비 70% 이상 보유	상≥5점 중≥3점 하<3점
	상 태	○ 2점 : 보유한 기준설비 중 7년 이내 구입 설비가 50% 이상 ○ 1점 : 보유한 기준설비 중 7년 이내 구입 설비가 30% 이상	
	예 방 및 검 교 정	○ 2점 : 설비 및 시험장비의 예방점검과 주기적인 검교정이 계획에 따라 철저히 시행되고 있음 ○ 1점 : 설비 및 시험장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방점검이 다소 미흡함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4. 수주 실적	○ 상 : 최근 1년 이내 동일 규격, 동일 품질등급 제품 납품 실적 1회 이상 ○ 중 : 최근 1년 이내 동일 규격 제품 납품실적 1회 이상
5. 운송	○ 다음 중 4개 이상 만족 시 상, 3개 만족 시 중 - 포장 및 운송방법 수립 - 저장방법 수립 - 운송장비의 방수, 배수 및 통풍 고려 - 자재의 식별 및 표시방법 수립 - 특수 품목에 대한 취급방법 수립

* 역무의 특성상 필요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② 최종평가

구분	적 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평가 기준	“상”이 70% 이상이고 “하”가 없는 경우	“상”이 60% 이상이고 “하”가 1개 이하인 경우	“상”이 60% 미만이거나 “하”가 2개 이상인 경우

2.3 품질분야

1) 평가항목별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1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체제 수립	이행 상태	
1. 조직	1.1 품질보증계획 수립, 이행, 책임			
	1.2 조직 또는 개인의 책임과 권한			
	1.3 품질감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책임			
	1.4 품질부서(인원)의 독립성			
	1.5 품질활동의 경영진 보고			
	1.6 조직 간의 공유영역업무 협조 체계			
	1.7 경영자 및 조직원의 품질인식			
	1.8 품질부서장의 자격 및 직위			
	2단계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1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체제 수립	이행 상태	
2. 품질 보증 계획	2.1 공식적인 품질보증계획서 유지			
	2.2 적용범위			
	2.3 품질보증계획서와 절차서간의 연관성			
	2.4 품질관련 업무수행자의 교육 및 훈련			
	2.5 품질요원 및 특수공정 요원의 자격부여			
	2.6 품질보증계획의 주기적 적합성 평가			
	2단계 평가			
3. 설계 관리	3.1 설계 입력			
	3.2 설계 공정			
	3.3 설계 확인			
	3.4 설계 변경관리			
	3.5 설계 공유영역 연계사항 관리			
	3.6 설계문서 및 기록관리			
	3.7 설계 적용 코드 및 기준 확보 여부			
	3.8 설계 인원 적절성			
	2단계 평가			
4. 구매 문서 관리	4.1 구매문서 포함내용 ① 공급자 업무범위 ② 기술요건 ③ 품질보증계획요건 ④ 출입 요건 ⑤ 감사 및 검사권한 ⑥ 문서관리요건 ⑦ 불일치사항 ⑧ 예비품 및 대체품			
	4.2 구매문서 검토(품질부서 등)			
	4.3 구매문서 변경			
	2단계 평가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5.1 품질관련 업무의 문서화			
	5.2 정량적 또는 정성적 판정기준			
	5.3 품질절차서, 업무절차서, 지시서 등 수립, 이행 상태			
	2단계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1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체제 수립	이행 상태	
6. 문서 관리	6.1 문서의 발행 및 관리체계 문서화 (작성, 검토, 승인, 발행권자)			
	6.2 문서 변경(중요한/경미한) 관리			
	6.3 최근 개정 분 품질문서 사용			
	6.4 최근 발행문서의 배부 및 종합목록 작성 관리			
	2단계 평가			
7. 구매 기자재 및 용역의 관리	7.1 구매계획 수립(품목 구분, 일정 등)			
	7.2 공급자 평가 및 선정			
	7.3 입찰서 평가			
	7.4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점검, 검사, 감사, 입회 등)			
	7.5 공급자 문서관리(품질증빙문서 관리 등)			
	7.6 품목 및 용역의 변경관리			
	7.7 품목 및 용역의 합격여부 판정			
	7.8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2단계 평가			
8. 기자재 식별 관리	8.1 식별관리 제도 수립, 문서화			
	8.2 기자재의 식별(적절성 포함) 및 추적성			
	2단계 평가			
9. 특수 작업 관리	9.1 공정관리 방법(절차서 등) 적절성			
	9.2 특수공정 ① 인원, 절차서 및 장비의 인정 ② 자격 인정된 인원, 방법 및 장비에 대한 기록			
	9.3 작업장 정리, 정돈, 청결성 및 작업환경			
	2단계 평가			
10. 검 사	10.1 검사요건(판정기준 등) 및 검사업무의 문서화			
	10.2 검사인원(보고의 독립성 및 자격인정)			
	10.3 필수 확인점, 입회점 설정			
	10.4 검사계획 수립			
	10.5 공정 중, 최종검사			
	10.6 검사결과 기록 유지			
	2단계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1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체제 수립	이행 상태	
11. 시험 관리	11.1 시험관리 요건 (시험요건, 판정기준, 시험요원 자격관리 등)			
	11.2 시험절차서 수립(시험목적, 선결요건 등)			
	11.3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			
	11.4 시험기록 보고서			
	2단계 평가			
12. 측정 및 시험 장비 관리	12.1 장비선정(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장비선정 등)			
	12.2 검교정 및 관리(검교정 방법, 주기, 식별, 부적절 장비사용에 따른 타당성 검토 조치 등)			
	12.3 장비의 취급 및 저장(정확도 유지 등)			
	12.4 기록 및 표시			
	2단계 평가			
13. 취급, 운송 및 저장	13.1 절차서(특수품목 포함), 지시서 등 문서화			
	13.2 취급/인양장비 운전원의 경험 및 훈련			
	13.3 취급 공구 또는 장비 관리			
	13.4 상태표시 또는 식별			
	2단계 평가			
14. 검사, 시험 및 운전 상태	14.1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관리방안			
	14.2 검사, 시험 미수행 품목의 사용방지 방안			
	14.3 상태표시 및 식별, 추적성			
	2단계 평가			
15. 불일치 기자재 관리	15.1 불일치 품목의 식별			
	15.2 불일치 품목의 격리			
	15.3 불일치 품목의 처리 ① 관리요건(문서화된 절차준수) ② 책임 및 권한(평가 및 조치) ③ 처리(수리, 현상태사용은 기술적 근거문서화)			
	15.4 수리 또는 재작업 (별도 판정기준 없을 시 원래 기준으로 재검사)			
	2단계 평가			
16. 시정 조치	16.1 품질위배사항 발견 즉시 식별 및 시정조치방안			
	16.2 품질위배사항(중대결함 포함)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			
	16.3 품질위배사항(중대결함 포함)의 식별, 원인, 조치내역의 문서화 및 경영층에 보고			
	16.4 시정조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한 후속조치			
	2단계 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1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체제 수립	이행 상태	
17. 품질 보증 기록	17.1 품질보증기록 관리체계 수립 적절성			
	17.2 기록의 유효성, 색인, 배부, 식별, 분류, 보관 및 수정			
	17.3 기록의 인수, 저장, 보존 및 보호			
	17.4 저장설비 및 유지상태			
	2단계 평가			
18. 품질 보증 감사	18.1 품질보증감사 계획			
	18.2 감사자 자격 및 감사반 구성			
	18.3 감사 수행			
	18.4 감사결과 보고/회신			
	18.5 감사결과 후속조치			
	18.6 감사 기록			
	2단계 평가			

① 1단계 평가(세부평가항목 별 체제수립 및 이행상태)

가) “가” : 점검결과 “만족”할 경우

나) “나” : 만족치 못한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 시정 가능할 경우

다) “다” : 지적사항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거나 방폐물 품질보증
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불만족” 인 경우

라) “N/A” : 역무의 특성상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

② 2단계 평가(체제수립 및 이행상태 집계)

가) “가” 가 60% 이상이고 “다”가 없으면 “A”

나) “가” 가 60% 미만이나 “다”가 없으면 “B”

다) “다” 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C”

라) “N/A”는 제외

③ 3단계 평가(평가항목 별 평가)

평가등급	체제수립	이행상태
상	A	A, B
중	B	A, B
하	A, B, C	C

2) 최종평가

구분	적격	조건부 적격	부적격
평가 기준	“상”이 70% 이상이고 “하”가 없는 경우	“상”이 60% 이상이고 “하”가 1개 이하인 경우	“상”이 60% 미만이거나 “하”가 2개 이상인 경우

2.4 경영분야

1) 평가항목별 평가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격	부적격
계약 이행	주거래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상에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도 발생	아니오	예
재무 상태	1A. 부채비율이 당해 업종 평균대비 500% 이상	아니오	예
	1B. 유동비율이 연속해서 당해 업종 평균대비 100% 미만	아니오	예
	2. 재무비율 평가결과 평점합계 6 미만	아니오	예
	3. 신용평가*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 이하”	아니오	예
	4. 신용등급(D&B Rating) 4 (국외업체만 적용)	아니오	예
자본금	자본금 규모가 해당품목 예상가격 5% 이하	아니오	예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외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 이하”와 동급인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는 부적격으로 평가함.

- ① 해당품목에 기 등록업체가 5개 업체 이하인 경우 등 공단의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기술부서 및 품질부서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주거래은행 신용상태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만으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경우, 등록 신청업체가 재무상태 평가의 1A/B번 항목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최근 연도 재무비율 평가

평가 분야	평 가 요 소	평가결과	평 점
부채 비율	○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부채비율 - $\text{업체부채비율} / \text{업종평균율} \times 100\%$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times 100\%$)	○ 40% 미만 ○ 4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20%미만 ○ 120% 이상	8 6 4 2
유동 비율	○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유동비율 - $\text{업체유동비율} / \text{업종평균율} \times 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	○ 120% 이상 ○ 80% 이상 120%미만 ○ 40% 이상 80% 미만 ○ 40% 미만	7 6 4 2
매출 액 순이 익율	○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 $\text{업체매출액순이익율} / \text{업종평균율} \times 100\%$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times 100\%$)	○ 120% 이상 ○ 80% 이상 120%미만 ○ 40% 이상 80% 미만 ○ 40% 미만	5 4 3 1

※ 참고사항

- 평가요소별 업종평균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종합)를 적용한다.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를 적용한다.
- “매출액순이익율” 분야의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써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점하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점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는 최근 1회계년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 자료에 따른다.
- 신설업체의 경우 심사항목 중 관련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심사항목의 평점을 “1”로 놓고 평가한다.

나) 신용등급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우수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양호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불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 참고사항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기자재 공급 유자격자 등록신청일 이전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등록신청일인 경우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록평가 대상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D & B Rating 평가 : 국외업체만 적용

- ㉠ D & B Rating 1 & 2 : 우수
- ㉡ D & B Rating 3 : 양호
- ㉢ D & B Rating 4 : 불량

④ 자본금규모 평가

가) 기술부서에서 예상가격을 통보한 구매품목의 공급업체에 한해 자본금 규모평가를 시행한다.

나) 예상가격은 최근 동일품목에 대한 계약실적이 있을 시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 자본금/예상가격×100%

2) 최종평가

항 목	적 격	부적격
평가기준	평가항목 모두 적격인 경우	평가항목 중 부적격이 1개라도 있는 경우